

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(제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.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.
- 마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,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,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.

1) 감경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한 경우
- 다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) 가중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한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	법 제21조 제 2 항 제 1 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허가취소
나.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)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, 입찰 불참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 2)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3)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해상특수 경비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경우	법 제21조 제 2 항 제 2 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다.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 2 항 제 3 호	시정명령	영업정지 3개월	허가취소
라.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고용한 경우	법 제21조 제 2 항 제 4 호	시정명령	영업정지 3개월	허가취소
마.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	법 제21조 제 2 항 제 5 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허가취소
바.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의 반입·반출·사용 내용을 기록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고한 경우	법 제21조 제 2 항 제 6 호	시정명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
사.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 2 항 제 7 호	시정명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
아. 법을 위반하여 법 제43조부터 제	법 제21조	영업정지	영업정지	영업정지

45조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	제 2 항 제 8 호	1개월	3개월	6개월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